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1092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조광묵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5. 8. 5. 체결된 협의분할 약정을 17,202,1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202,1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2015. 8. 5. 체결된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10.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차전10654 구상금 사건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1.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받았고, 신용보증기금은 B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2020. 6. 1.을 기준으로 한 위 지급명령 채권의 원리금은 119,068,398원(= 원금 76,035,214원 + 가지급금 135,858원 + 이자 42,897,326원)이다.

다. C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15.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 E, F, G, B이 있으므로, B의 상속분은 2/13이다.

라. C의 상속인들은 2015. 1.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2015. 8.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에 따른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B이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B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 중 B의 지분(2/13)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어머니를 부양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이나 부모님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피고가 부담해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채무도 피고가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부모님을 봉양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한 것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대가로 B이 그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지분취득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협의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이상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5. 9.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6,000,000원의 H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6,000,000원의 1999. 8.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2008. 2.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2015. 9. 15.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근저당권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으로 회복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2/13)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6. 1.까지의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은 119,068,398원이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5. 29.경 시가는 185,000,000원이고, 위 말소된 각 근저당권의 말소 무렵 피담보채무액은 27,500,000원과 45,686,327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도 위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11,813,673원(= 185,000,000원 - 27,500,000원 - 45,686,327원)이고, 그 중 B의 2/13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17,202,103원(= 111,813,673원 × 2/13,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리고 위 B의 담보가액 17,202,103원이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19,068,398원보다 적으므로, 그 중 적은 금액인 담보가액 17,202,103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4)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17,202,10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협의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 중 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17,202,1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순남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8층 아파트

1층 472.456㎡

2층 472.456㎡

3층 472.456㎡

4층 472.456㎡

5층 472.456㎡

6층 466.624㎡

7층 466.624㎡

8층 466.624㎡

9층 466.624㎡

10층 466.624㎡

11층 466.624㎡

12층 466.624㎡

13층 466.624㎡

14층 466.624㎡

15층 466.624㎡

16층 466.624㎡

17층 466.624㎡

18층 466.624㎡

지층 455.2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101.70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4327㎡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24,327분의 41.783

